

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4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17일

발 의 자 : 이광성, 권영희, 채유미, 오현정,  
김제리, 송명화, 김정환, 최정순,  
김경영, 이동현, 문장길 의원  
(11명)

## 1. 제안 이유

에너지정책 위원회 구성시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며, 위촉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## 2. 주요 골자

가. 위원장 수를 현행 위원회 구성에 맞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2조제2항)

나. 위원의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규정함(안 제12조제3항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에너지정책 위원회”를 “에너지정책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은 시민단체, 종교계, 경제계, 학계, 교육계, 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, “2명으로 한다”를 “사람 1명으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기후환경본부장, 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·본부·국장
2. 위촉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환경·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12조제3항 중 “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두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제6항 중 “범위 안”을 범위“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,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<u>에너지정책 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위원은 시민단체·종교계·경제계·학계·교육계·언론계 등 각 사회계층에서 명망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2명으로 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u></p>	<p>제12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에너지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위원장</u>----- ----- <u>사람 1명으로</u> <u>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</u> <u>된다.</u></p> <p>1. <u>당연직 위원 : 기후환경본부장,</u> <u>에너지 업무와 관련된 실·본부·국장</u></p> <p>2. <u>위촉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</u> <u>환경·에너지 분야에 대한 식견 및</u> <u>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</u> <u>위촉하는 사람</u></p> <p>③ <u>위촉위원</u>----- <u>두 차례만 연임</u>----- . <u>다만, 보궐</u> <u>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</u> <u>한다.</u></p>

④ ~ ⑤ (생략)

⑥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---  
-- 범위-----.